

〈2022 공인노무사 1차 전범위 실전 모의고사 정오표〉

SET 01

과목명	수정	내용
노동법(1)	[문제 04번]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지문 ④번]</p> <p>④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확인 조사 결과 그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(맞는 지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해설]</p> <p>근로기준법은 2021. 10. 14. 개정으로 제116조 제2항에 해당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. 따라서 제30회 시험까지는 틀린 지문이었지만, 지금은 맞는 지문입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정답 수정] 정답 없음.</p>
	[문제 09번]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지문 ⑤번]</p> <p>⑤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라 하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.(맞는 지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정답 수정] 정답 없음.</p>
민법	[문제 63번]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지문 ⑤번]</p> <p>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 하지만,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공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“있다.”→ “없다”로 수정</p>

SET 02

과목명	수정	내용
노동법(2)	[해설 38번]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지문 ②번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출제의도. "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의 통보"를 받지 못한 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. 이나, 원고 지문에서는 "행정관청 통보"로 오해 소지 있음. 결과적으로, 2번은 출제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해 옳지 못한 지문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정답 수정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③번 → ②, ③번으로 수정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해설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행정관청의 안전보호시설 징의행위 중단 통보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한 시점부터 효력을 잃는 게 맞습니다.</p>
	[해설 46번]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정답 수정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④번 → ⑤번으로 수정</p>
민법	[해설 64번]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정답 수정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④번 → ②번으로 수정</p>